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529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529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4나201558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3가합646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1. B

2. C

판결 선고2017. 7. 1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4나20155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N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G에게 지급한 정산금 중 5,838,862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들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은 2009. 11. 18.부터 2011. 3. 31.까지 피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공유한 원심 판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10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J가 사용·수익한 이 사건 제9 부동산(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1, 2층 부분 및 그 부지로서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펜션 부지'라 한다) 중 이 사건 펜션의 1, 2층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통틀어 'J 사용·수익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소수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위 기간의 임료 상당액(이하 '이 사건 임료

상당액'이라 한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임료 상당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임료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44,112,858원에서 J 사용·수익 부분의 임료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4,500,493원을 공제한 나머지 39,612,365원이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2016. 4. 18.자 및 2016. 6. 30.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법인은 '① 이 사건 펜션 중 1, 2층 부분의 임료액'과 '② 이 사건 펜션 부지의 임료 중 이 사건 펜션의 1, 2층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② 부분의 금액을 이하 '② J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펜션 부지 임료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J 사용·수익 부분의 임료를 산정하였는데, '② J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펜션 부지 임료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펜션 부지의 임료에 이 사건 펜션과 이에 인접한 이 사건 제10 부동산(호텔)의 전체 건물 면적($1,213.83\text{m}^2 + 1,198.9\text{m}^2$)에서 이 사건 펜션 1, 2층 부분의 면적(1층 $247.51\text{m}^2 + 2\text{층 } 247.51\text{m}^2$)이 차지하는 비율(약 20.5%)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러한 산정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J 사용·수익 부분의 임료 상당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펜션 부지는 이 사건 제10 부동산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료 상당액에서 제외되는 '② J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펜션 부지 임료액'은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펜션의 전체 면적($1,213.83\text{m}^2$)에서 1, 2층 부분의 면적(1층 $247.51\text{m}^2 + 2\text{층 } 247.51\text{m}^2$)이 차지하는 비율(약 40.7%)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3)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펜션 및 그 부지별로 원고의 지분과 해당 임료가 모두 다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 J 사용·수익 부분의 임료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정할 때에 '① 이 사건 펜션 중 1, 2층 부분의 임료액'에는 이 사건 펜션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곱하고, '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펜션 부지 임료액'에는 이 사건 펜션 부지별로 원고의 각 공유지분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및 정산금에 관하여 2013. 5. 9.부터 이 사건 2016.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여야 함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